

13.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7월 7일
- 발의의원 : 이태손, 김재우, 김정옥, 박종필, 이동욱, 이재화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허시영,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7월 25일),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태손 의원)

- 제안 이유
 - 지역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매년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
 -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근거 마련(안 제6조)
 - 치유농업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사업화 및 창업지원 사업 등

- 전문가 자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치유농업사의 배치 의무 규정(안 제9조)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교육업무 전담 부서에 1명 이상 배치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제안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이나 체계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구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이 대구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사” 등 용어의 뜻을 「치유농업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의 정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대구광역시시장에게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했음.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시장이 「치유농업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음.

*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22~’26) / 농촌진흥청 / ‘22. 4.

* 2023년 시행계획 / 농촌진흥청 / ‘23. 5.

-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유사 사업계획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실태조사)는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음.

○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근거 마련(안 제6조)

- 안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는 시장이 지역에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교육과 홍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가 자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시장이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등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명시하였음.
- 치유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한 학계, 민간 기관 등과의 확장적 거버넌스 구축,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와 재정을 연계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치유농업사 배치 의무 부여(안 제9조)

- 안 제9조(치유농업사의 배치)는 시장이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음.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치유농업사 배출 현황 : 2급 253명('21년 93명, '22년 160명) / 농촌진흥청

** 대구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 2019년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수요분석 결과¹¹⁾에 따르면 치유농업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 분야에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치유농업사의 배치는 치유농업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입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치유농업법 시행령에서 이미 치유농업사의 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치유농업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전통적인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투자가 증대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 되어 농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¹²⁾

11) 치유농업 형태별 수요자 인식 및 수요분석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배승중 외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2019)
 12)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경미 외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2013)

- 국내에서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3. 24. 제정)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고, 서울·수도권과 4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¹³⁾에서는 45.2%가 치유농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76.7%가 참여의사를 보여 향후 치유농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치유농업서비스의 정책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0.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높은 인식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민간의 영역에서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활발한 정책적 움직임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있음.
- 특히, 전형적인 농업 기반 농촌사회인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으므로, 대구시가 군위군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하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더욱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13) 치유농업 형태별 수요자 인식 및 수요분석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배승중 외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2019)

-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 되어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치유농업사의 배치의무를 부여한 안 제9조의 경우, 「치유농업법」 시행령에서 이미 치유농업사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대구시는 관계 법령과 제정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지역 농촌자원에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등 관련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르는 예산,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본 조례는 「치유농업법」과 관계되는 법률로, 안 제9조의 치유농업사 배치에 대해서는 치유농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안에서 다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없어도 될 조항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9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10조 (생략)</u>	<u>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수당·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